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항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추진협의체의 위원에 추가함으로써 국가항행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도모하는 한편,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제외한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 효력 정지를 명하고,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항증명 효력 정지 해제를 명령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구성 위원 추가(안 제9조의2제4항 라목 및 마목)

항공교통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분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항공안전기술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추진협의체 위원으로 추가

나. 운항증명 효력정지 및 효력정지 해제명령 권한 위임(안 제26조제1항 제33호의2)

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제외한 항공기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운항증명 효

력의 정지명령 및 해제명령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국무조정실 협의 예정

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4항제4호에 라목 및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「항공안전기술원법」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

마.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

제26조제1항에 제3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3의2. 법 제90조제9항 및 제10항(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명령 및 해제명령(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명령 및 해제명령은 제외한다)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의2(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) ① ~ ③ (생략)	제9조의2(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 각 1명	4. ----- ----- ----- -----
가. ~ 다. (생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라. 「항공안전기술원법」에</u>
	<u>따른 항공안전기술원</u>
<u><신 설></u>	<u>마.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</u>
	<u>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</u>
5. ~ 7. (생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
⑤ ~ ⑧ (생략)	⑤ ~ ⑧ (현행과 같음)
제26조(권한 및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	제26조(권한 및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----- ----- -----

② ~ ⑩ (생략)

② ~ ⑩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255